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44

발의연월일 : 2021. 12. 1.

발 의 자:김승남 · 윤재갑 · 민병덕

맹성규・서동용・이수진비

최종윤 • 이원택 • 김회재

주철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위판장의 수산물전자거래 확대, 위판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2019년 기준 전국 수산물위판장 시설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약 31 퍼센트가 노후되어 있고, 약 65퍼센트가 위생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위판장에서 위판·유통되는 수산물이 위생관리에 취약하다는 문제점 이 지적되고 있음.

또한 정부는 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을 위해 수협조합이 운영중인 위판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청정위판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사업비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부분을 제외한 수협조합의 부담률이 30퍼센트에 달해 일선 수협조합에서는 재원조달 의 한계와 낮은 수익성 등으로 위판장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에 관한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수협조합이 지원계획에 따라 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수협중앙회가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협조합의 재원조달 부담 완화를 통한 보다 위생적인 위판장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위판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을 "위판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협중앙회는 수협조합이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2(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제22조의2(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등) ①
체는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위판장의 수산물전자거	
래(전자경매를 포함한다) 확대,	
위판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위판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세	
워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수협중앙회는 수협조합이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위판
	<u>장의 위생여건 개선 사업을 실</u>
	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
	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